



스마트폰으로
좌측의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호매실 B-3블록 분양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걱정없이 10년간 새집에서 내 집처럼 살고,
10년후 내 집으로 분양받자!

수원 호매실

10년공공임대 B-3블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1385번지) 인근

공급문의
1600-1004
(평일 09:00 ~ 18:00)
031)250-8351
운영시간 : 10:00~17:00

www.lhhms.co.kr | m.lhhms.co.kr

사통팔달 연결되는 빠른교통 | 청정자연의 쾌적한 주거환경 | 다양한 편의시설의 생활인프라

S u w o n H o m a e s i l B - 3 B L



본 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내가 출자한 리츠(주)NH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며, 나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합니다.



인간 · 도시 · 자연이 하나가 되는 그린행복도시 호매실

Contents

- 02 Contents
- 04 이미지투시도
- 06 지역조감도 | 교통망도
- 08 지구조감도 | 토지이용계획도
- 10 단지조감도 | 단지배치도
- 12 System
- 16 Interior
- 24 Unit plan
- 34 단지배치도 | 동호배치도
- 36 주요마감재 시설내역
- 37 입주자모집공고

※ 본 카타로그 상의 이미지, 조감도 및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풍부한 교육인프라
쾌속교통과 편리한 생활인프라는 덤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가치가 더 빛나는 곳-
이곳은 호매실 B-3블록입니다



* 상가 이미지 두지도는 신도시의 미래를 돕기 위해 제작된 CC제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물의 색채 및 외부 상세 내역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Best Location

지역조감도 · 교통망도



호매실의 미래가 시작되는 자리! 주거가치와 미래가치까지 모두 갖춘 호매실의 중심단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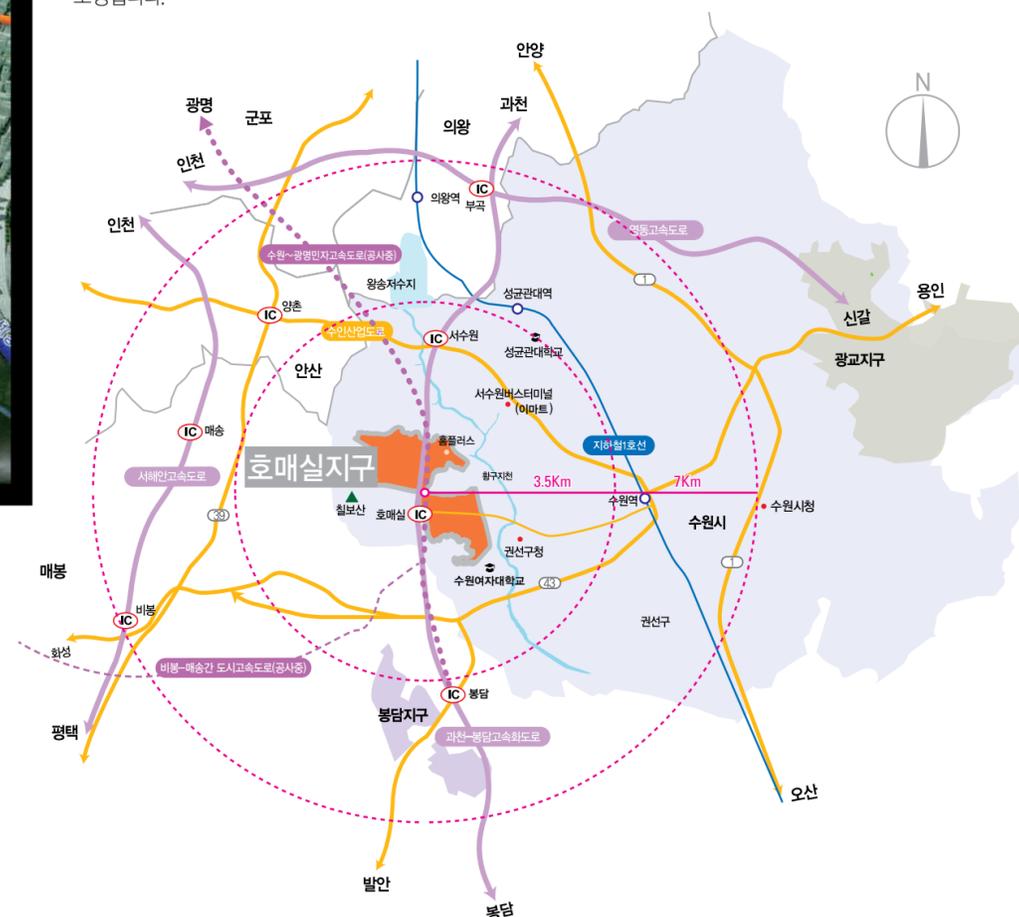
사통팔달 교통프리미엄 _ 강남과 연결되는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와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공사중)는 물론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분당선 등 빠르고 편리한 최적의 교통망이 형성됩니다.

미래문화 생활프리미엄 _ 지구 인근 서수원 이마트, 수원역 AK백화점, 수원역 롯데쇼핑타운 및 단지 인근 기존 시가지 생활 인프라는 물론 홈플러스, 제2실내체육관(공사중), 공공도서관 등이 있어 높은 생활편익이 기대됩니다.

교육특구 교육프리미엄 _ 단지 인근에 초·중·고교가 개교 및 개교예정이고 지구 인근에 성균관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자녀들의 교육편의 제공은 물론 호매실의 미래가치까지 높아집니다.

힐링시티 자연프리미엄 _ 푸른 숲이 우거진 칠보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울리게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지구내에 생태공원 및 생태체험관이 있어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으며 단지 인근의 호매실천을 이용한 다양한 공원이 조성됩니다.

※ 상기 지역조감도 및 교통망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구외곽 신설도로 및 전철 등 기반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공사중)의 호매실지구내 통과 구간은 지하화 될 예정입니다.



Best Landscape

단지조감도 · 단지배치도



※ 상기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민의 동선까지 생각한
과학적 단지설계로
 주거의 **편리함과 쾌적한 환경을**
 모두 담았습니다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최적의 단지입니다!

생활편리형단지 _ 단지 내에 입주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 여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넉넉한 동간거리 _ 동과 동사이의 간격이 넓은 쾌적한 단지로 설계하여 입주민의 사생활과 조망권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햇살가득한단지 _ 전 세대를 남동·남서향으로 배치하여, 풍부한 일조량을 누리실 수 있어 햇살이 집안 가득 들어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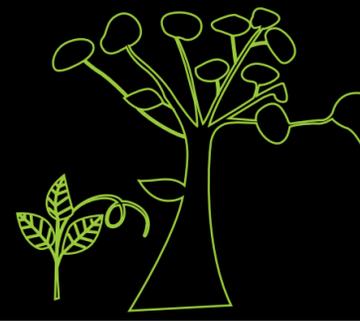


- 1,300세대(13개동)
- 75A 194세대
 - 84A2 806세대
 - 84C 98세대
 - 84A1 77세대
 - 84B 125세대

Digital & Wellbeing



Wellbeing System



디지털 시스템

생활이 편리해지는 첨단 생활 시스템

편리하고 안전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Digital & Security System

- 홈네트워크시스템** 월패드를 이용하여 방문자 확인, 방범 및 현관 문열림 제어 등이 가능합니다.
- 위성방송** 국내 디지털 지상방송은 물론 국내 위성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통제시스템** 외부인의 차량출입을 사전에 확인, 통제하여 입주자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합니다.
- CCTV**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주출입구, 어린이 놀이터 등에 CCTV가 설치됩니다.
- 원격검침시스템** 통합검침단말기로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을 세대 출입 없이 검침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배달물품을 입주자와 배달원이 직접적인 대면 없이 수령 또는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일괄소등스위치** 외출 시 세대 내 조명을 한번에 소등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웰빙 시스템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건강 시스템

깨끗하고 경제적인 웰빙 시스템으로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드립니다



Clean & Economy System

- 가스쿡탑** 빌트인 가스쿡탑(3구형)으로 생활의 편리를 더해 드립니다.
- 음식물 탈수기**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줄여 쓰레기 배출시에도 편리합니다.
- 싱크용 절수기** 발로 조절할 수 있는 절수기를 설치하여 더욱 편리하고 물 사용량도 절약됩니다.
- 실내환기시스템** 신선한 외부공기 도입이 용이하고 에너지 절약적인 환기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실별온도조절기** 각 실별로 온도조절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해 드립니다.
- 비데** 청결과 위생을 위한 비데 설치로 한층 격조 있는 욕실환경을 만들어 갑니다.(부부욕실)



●● 거실 월패드 ●●



●● 무인택배보관함 ●●



●● 차량출입 통제시스템 ●●



●● 음식물 탈수기 ●●



●● 싱크용 절수기 ●●



●● 가스쿡탑 ●●



●● 비데 ●●

※ 상기 사진과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사진과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돌아와
내 가족과 마주한 시간
차 한잔의 여유와 우리 가족의 행복이
따뜻하게 흐르는 시간들...



Living room 거실

84A2 거실



전망 좋은 아름다운 갤러리처럼
삶이 곧 풍경화가 되는 공간입니다

Living Room Point

- 현관 디지털도어록(홈네트워크 연동)
- 세대단말기(Wall Pad)
- 실크벽지 거실아트월
- 룸카펫
- 실별 온도조절기



- 상기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색상 및 재질이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는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감재 시설표역은 '내부마감재 시설표역 및 각 형별 평면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건분주액,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재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색상 및 무늬 등이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의 거실/침실/주방 벽부위 장식물 등은 실제 시공과 관련한 전시 및 연출용 인테리어 소품으로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불박이 가구, 주방 가구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됩니다.

침실 Bedroom

새의 노랫소리가 창을 두드려
상쾌한 아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Bed Room Point

- 룸카펫
- 실크벽지 도배지
- 실별 온도조절기



- 상기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색상 및 재질이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는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감재 시설표역은 '내부마감재 시설표역 및 각 형별 평면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건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재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색상 및 무늬 등이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의 거실/침실/주방 벽부위 장식물 등은 실제 시공과 관련없는 전시 및 연출용 인테리어 소품으로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불박이 가구, 주방 가구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됩니다.



Dining room 주방



84A2 주방

풍성하고 향기로운 만찬이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Dining Room Point

- 룸카펫
- 침니형 레인지후드
- 3구형 빌트인 가스쿡탑
- 싱크용 절수기
- 음식물 탈수기



75A 주방

- 상기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색상 및 재질이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는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감재 시설편역은 '내부마감재 시설편역 및 각 형별 평면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건분주액,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색상 및 무늬 등이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의 거실/침실/주방 벽부위 장식물 등은 실제 시공과 관련없는 전시 및 연출용 인테리어 소품으로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불박이 가구, 주방 가구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됩니다.

욕실 Bathroom

하루의 피로를 벗고
휴식을 불러넣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Bath Room Point

- 비데(부부욕실)
- 온도조절 욕조수전(안마헤드-공용욕실)
- 원피스 양변기(high탱크형)
- 휴대폰 거치대 겸 휴지걸이



- 상기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색상 및 재질이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는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감재 시설표역은 '내부마감재 시설표역 및 각 형별 평면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건본주텍,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재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색상 및 무늬 등이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의 거실/침실/주방 벽부위 장식물 등은 실제 시공과 관련없는 전시 및 연출용 인테리어 소품으로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불박이 가구, 주방 가구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됩니다.

Unit Plan

75A 주택형 075.8400A / 194세대

※ 주택형별로 접수받으며, 동호배정은 주택형 내에서 항별·층별 타입별 구분없이 컴퓨터 추첨에 의해 결정 됨

주요 마감재

- 현관(Entrance) : 세대 현관문 / 디지털도어록 / 폴리싱타일 현관바닥 / 인조대리석 마루귀틀 / 현관일괄소등 스위치 / 신발장
- 거실(Living Room) : 실크 벽지 / 실크 천장지 / 거실아트월 / 홈네트워크 월패드 / 거실조명 및 세대 환기스위치 / 룸카펫 /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 / 온도조절기
- 침실(Bed Room) : 실크 벽지 / 실크 천장지 / 룸카펫 / 온도조절기 /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침실1만 해당)
- 주방(Dining Room) : 주방기구 / 레인지 후드 / 3구형 가스쿡탑 / 음식물탈수기 / 싱크용 철수기
- 욕실(Bath Room) : 휴대폰 거치대 겸 휴지걸이 / 세면기 / 양변기 / 비데(부부욕실) / 수납장

세대면적

전용면적	75.8400 m ²
주거공용면적	23.6732 m ²
기타공용면적	3.1968 m ²
주차장면적	27.6320 m ²
계약면적	130.3420 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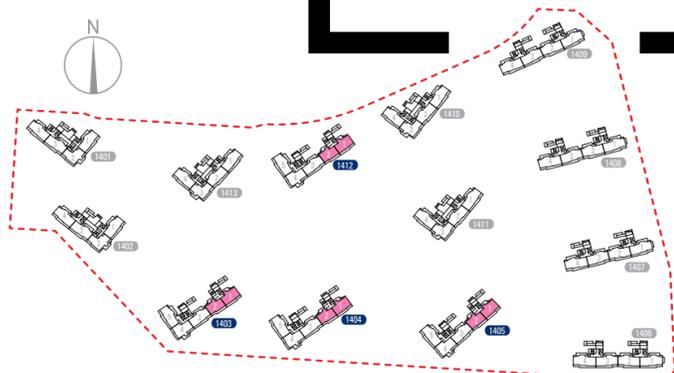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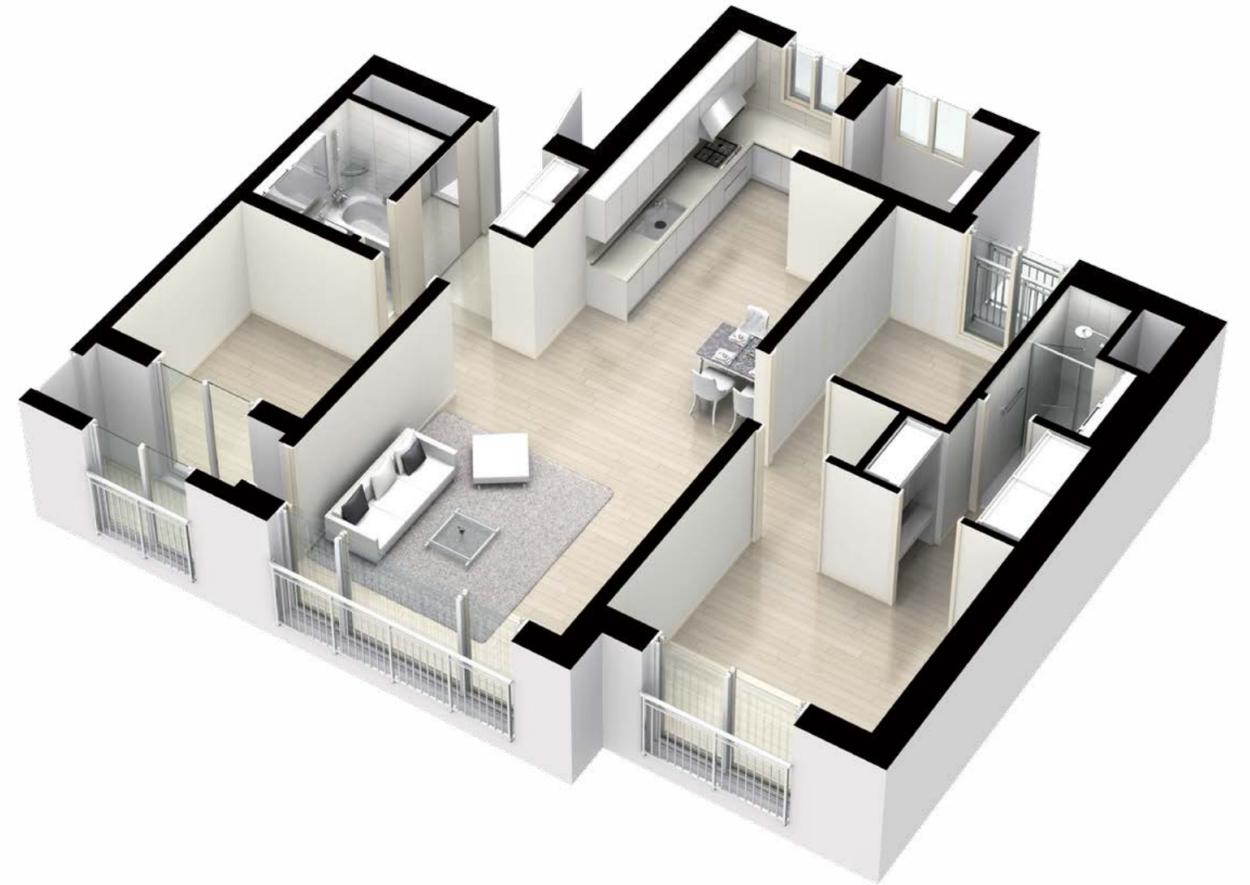
실별면적

거실	23.45 m ²
주방/식당	13.08 m ²
침실 1	9.17 m ²
침실 2	9.05 m ²
침실 3	7.42 m ²
공용욕실	3.88 m ²
부부욕실	2.78 m ²
현관	3.12 m ²
드레스룸	3.89 m ²

발코니면적

발코니 1	17.00 m ²
발코니 2	10.90 m ²

※ 상기 면적은 발코니 확장전 기본형 면적입니다.



- ※ 본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아이소 상의 식탁 및 기구, 실내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로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 마감재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치수입니다. (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끝선 기준임)
- ※ 본 단위세대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설치공간은 제품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전 수납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단실 출입방향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²X0.3025=평)
- ※ 발코니2에는 선반이 설치됩니다.
- ※ 세대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Unit Plan

84A1 주택형 084.9400A / 77세대

* 주택형별로 접수받으며, 동호배정은 주택형 내에서 항별·층별 타입별 구분없이 컴퓨터 추천에 의해 결정 됨

주요 마감재

- 현 관(Entrance) : 세대 현관문 / 디지털도어록 / 폴리싱타일 현관바닥 / 인조대리석 마루귀틀 / 현관일괄소등 스위치 / 신발장
- 거 실(Living Room) : 실크 벽지 / 실크 천장지 / 거실아트월 / 홈네트워크 월패드 / 거실조명 및 세대 환기스위치 / 룸카펫 /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 / 온도조절기
- 침 실(Bed Room) : 실크 벽지 / 실크 천장지 / 룸카펫 / 온도조절기 /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침실 1만 해당)
- 주 방(Dining Room) : 주방기구 / 레인지 후드 / 3구형 가스쿡탑 / 음식물탈수기 / 싱크용 철수기
- 욕 실(Bath Room) : 휴대폰 거치대 겸 휴지걸이 / 세면기 / 양변기 / 비데(부부욕실) / 수납장

세대면적

전 용 면 적	84.9400 m ²
주거공용면적	26.5138 m ²
기타공용면적	3.5803 m ²
주 차 장 면 적	30.9476 m ²
계 약 면 적	145.9817 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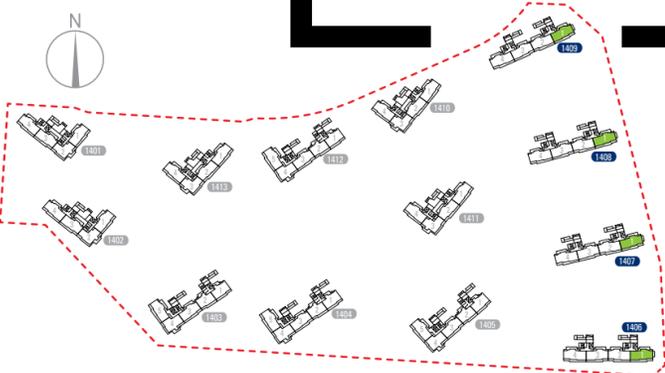
실별면적

거 실	23.10 m ²
주 방 / 식 당	12.08 m ²
침 실 1	11.17 m ²
침 실 2	8.05 m ²
침 실 3	8.63 m ²
공 용 욕 실	3.87 m ²
부 부 욕 실	3.92 m ²
현 관	4.76 m ²
드 레 스 룸	4.69 m ²
알 파 룸	4.67 m ²

발코니면적

발 코 니 1	21.18 m ²
발 코 니 2	11.39 m ²
발 코 니 3	6.01 m ²
발 코 니 4	3.46 m ²

* 상기 면적은 발코니 확장전 기본형 면적입니다.



- * 본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아이소 상의 식탁 및 기구, 실내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로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미감재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치수입니다. (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끝선 기준임)
- * 본 단위세대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설치공간은 제품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전 수납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단실 출입방향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²X0.3025=평)
- * 발코니2에는 선반이 설치됩니다.
- * 세대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Unit Plan

84A2 주택형 084.9400D / 806세대

* 주택형별로 접수받으며, 동호배정은 주택형 내에서 항별·층별 타입별 구분없이 컴퓨터 추첨에 의해 결정 됨

주요 마감재

- 현 관(Entrance) : 세대 현관문 / 디지털도어록 / 폴리싱타일 현관바닥 / 인조대리석 마루귀틀 / 현관일괄소등 스위치 / 신발장
- 거 실(Living Room) : 실크 벽지 / 실크 천장지 / 거실아트월 / 홈네트워크 월패드 / 거실조명 및 세대 환기스위치 / 룸카펫 /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 / 온도조절기
- 침 실(Bed Room) : 실크 벽지 / 실크 천장지 / 룸카펫 / 온도조절기 /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침실 1만 해당)
- 주 방(Dining Room) : 주방기구 / 레인지 후드 / 3구형 가스쿡탑 / 음식물탈수기 / 싱크용 철수기
- 욕 실(Bath Room) : 휴대폰 거치대 겸 휴지걸이 / 세면기 / 양변기 / 비데(부부욕실) / 수납장

세대면적

전 용 면 적	84.9400 m ²
주거공용면적	26.5138 m ²
기타공용면적	3.5803 m ²
주 차 장 면 적	30.9476 m ²
계 약 면 적	145.9817 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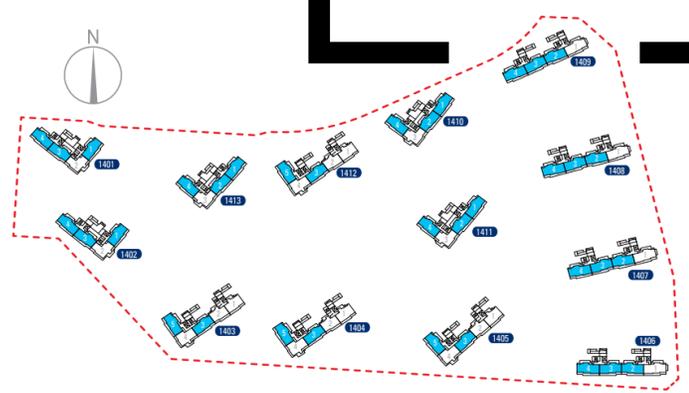
실별면적

거 실	23.10 m ²
주 방 / 식 당	12.08 m ²
침 실 1	11.17 m ²
침 실 2	8.05 m ²
침 실 3	8.63 m ²
공 용 욕 실	3.87 m ²
부 부 욕 실	3.92 m ²
현 관	4.76 m ²
드 레 스 룸	4.69 m ²
알 파 룸	4.67 m ²

발코니면적

발 코 니 1	21.19 m ²
발 코 니 2	11.40 m ²
발 코 니 3	3.46 m ²

* 상기 면적은 발코니 확장전 기본형 면적입니다.



- * 본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아이소 상의 식탁 및 기구, 실내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로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미감재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치수입니다. (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끝선 기준임)
- * 본 단위세대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설치공간은 제품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전 수납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단실 출입방향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²X0.3025=평)
- * 발코니2에는 선반이 설치됩니다.
- * 세대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Unit Plan

84B 주택형 084.8500B / 125세대

※ 주택형별로 접수받으며, 동호배정은 주택형 내에서 항별·층별 타입별 구분없이 컴퓨터 추첨에 의해 결정 됨

주요 마감재

- 현관(Entrance) : 세대 현관문 / 디지털도어록 / 폴리싱타일 현관바닥 / 인조대리석 마루귀틀 / 현관일괄소등 스위치 / 신발장
- 거실(Living Room) : 실크 벽지 / 실크 천장지 / 거실아트월 / 홈네트워크 월패드 / 거실조명 및 세대 환기스위치 / 룸카펫 /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 / 온도조절기
- 침실(Bed Room) : 실크 벽지 / 실크 천장지 / 룸카펫 / 온도조절기 /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침실 1만 해당)
- 주방(Dining Room) : 주방기구 / 레인지 후드 / 3구형 가스쿡탑 / 음식물탈수기 / 싱크용 절수기
- 욕실(Bath Room) : 휴대폰 거치대 겸 휴지걸이 / 세면기 / 양변기 / 비데(부부욕실) / 수납장

세대면적

전용면적	84.8500 m ²
주거공용면적	26.4857 m ²
기타공용면적	3.5766 m ²
주차장면적	30.9148 m ²
계약면적	145.8271 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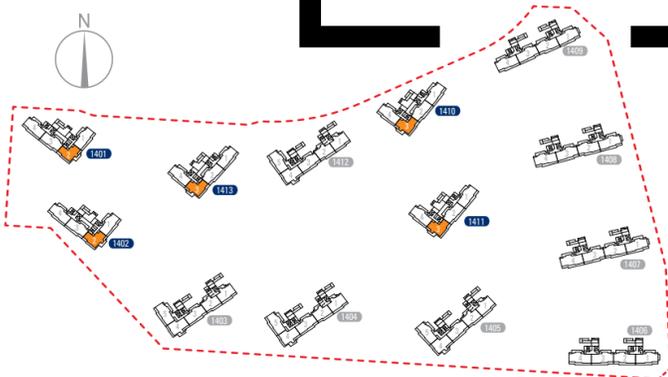
실별면적

거실	25.23 m ²
주방/식당	14.10 m ²
펜트리	1.73 m ²
침실 1	10.75 m ²
침실 2	6.49 m ²
침실 3	9.58 m ²
공용욕실	3.90 m ²
부부욕실	3.68 m ²
현관	4.12 m ²
드레스룸	4.41 m ²
발코니 추가	0.86 m ²

발코니면적

발코니 1	4.99 m ²
발코니 2	11.55 m ²
발코니 3	5.25 m ²
발코니 4	9.24 m ²

※ 상기 면적은 발코니 확장전 기본형 면적입니다.



- ※ 본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아이소 상의 식탁 및 기구, 실내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로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 마감재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치수입니다. (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끝선 기준임)
- ※ 본 단위세대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설치공간은 제품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전 수납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단실 출입방향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²X0.3025=평)
- ※ 발코니2에는 선반이 설치됩니다.
- ※ 세대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Unit Plan

84C 주택형 084.9200C / 98세대

※ 주택형별로 접수받으며, 동호배정은 주택형 내에서 항별 · 층별 타입별 구분없이 컴퓨터 추첨에 의해 결정 됨

주요 마감재

- 현 관(Entrance) : 세대 현관문 / 디지털도어록 / 폴리싱타일 현관바닥 / 인조대리석 마루귀틀 / 현관일괄소등 스위치 / 신발장
- 거 실(Living Room) : 실크 벽지 / 실크 천장지 / 거실아트월 / 홈네트워크 월패드 / 거실조명 및 세대 환기스위치 / 룸카펫 /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 / 온도조절기
- 침 실(Bed Room) : 실크 벽지 / 실크 천장지 / 룸카펫 / 온도조절기 /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침실 1만 해당)
- 주 방(Dining Room) : 주방기구 / 레인지 후드 / 3구형 가스쿡탑 / 음식물탈수기 / 싱크용 절수기
- 욕 실(Bath Room) : 휴대폰 거치대 겸 휴지걸이 / 세면기 / 양변기 / 비데(부부욕실) / 수납장

세대면적

전 용 면 적	84.9200 m ²
주거공용면적	26.5075 m ²
기타공용면적	3.5795 m ²
주 차 장 면 적	30.9403 m ²
계 약 면 적	145.9473 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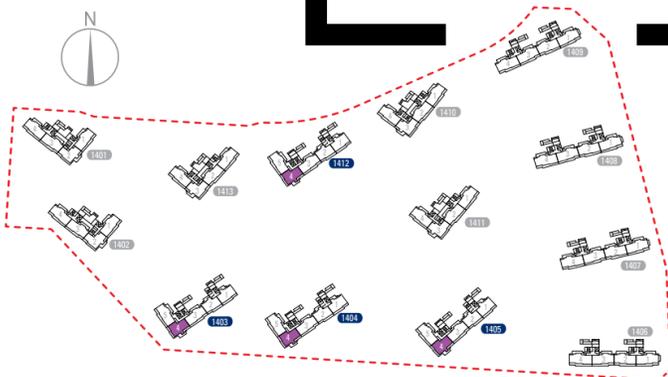
실별면적

거 실	27.53 m ²
주 방 / 식 당	11.73 m ²
침 실 1	12.84 m ²
침 실 2	7.80 m ²
침 실 3	7.30 m ²
공 용 욕 실	3.81 m ²
부 부 욕 실	3.99 m ²
현 관	4.72 m ²
드 레 스 룸	4.52 m ²
발 코 니 추 가	0.68 m ²

발코니면적

발 코 니 1	10.66 m ²
발 코 니 2	10.23 m ²
발 코 니 3	7.85 m ²

※ 상기 면적은 발코니 확장전 기본형 면적입니다.



- ※ 본 평면도 및 아이소는 일부세대를 표기한 것이며, 동 · 호별 주거공용부위는 형태 및 면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아이소 상의 식탁 및 기구, 실내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로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미감재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치수입니다. (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끝선 기준임)
- ※ 본 단위세대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습니다.
- ※ 세탁기 등 가전제품 설치공간은 제품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전 수납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단실 출입방향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 ※ 벽체두께는 구조설계상 동 및 층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m²X0.3025=평)
- ※ 발코니2에는 선반이 설치됩니다.
- ※ 세대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도 / 동호배치도



수원호매실 B-3블록 10년공공임대 1,300세대(13개동)

75A 194세대

84A1 77세대

84A2 806세대

84B 125세대

84C 98세대

생활은 풍요롭게! 교통은 빠르게! 가치는 남다르게!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품격높은 생활의 시작
호매실에서 만나는 우리가족 행복찾기

◆상기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보관소, 자전거보관소 등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01 2502	2501 2502	2501 2502	2501 2502 2503 2504 2505	2503 2504 2505	2503 2504 2505	2503 2504	2503 2504	2503 2504	2503 2504	2501 2502 2503 2504 2505	2501 2502 2503 2504	2501 2502 2503 2504	2501 2502 2503 2504
2401 2402	2401 2402 2403 2404	2401 2402	2401 2402 2403 2404 2405	2403 2404 2405	2403 2404 2405	2403 2404	2403 2404	2403 2404	2403 2404	2401 2402 2403 2404 2405	2401 2402 2403 2404	2401 2402 2403 2404	2401 2402 2403 2404
2301 2302 2303 2304	2301 2302 2303 2304	2301 2302 2303 2304 2305	2301 2302 2303 2304 2305	2303 2304 2305	2303 2304 2305	2303 2304	2303 2304	2303 2304	2303 2304	2301 2302 2303 2304 2305	2301 2302 2303 2304	2301 2302 2303 2304	2301 2302 2303 2304
2201 2202 2203 2204	2201 2202 2203 2204	2201 2202 2203 2204 2205	2201 2202 2203 2204 2205	2203 2204 2205	2203 2204 2205	2203 2204	2203 2204	2203 2204	2203 2204	2201 2202 2203 2204 2205	2201 2202 2203 2204	2201 2202 2203 2204	2201 2202 2203 2204
2101 2102 2103 2104	2101 2102 2103 2104	2101 2102 2103 2104 2105	2101 2102 2103 2104 2105	2103 2104 2105	2103 2104 2105	2103 2104	2103 2104	2103 2104	2103 2104	2101 2102 2103 2104 2105	2101 2102 2103 2104	2101 2102 2103 2104	2101 2102 2103 2104
2001 2002 2003 2004	2001 2002 2003 2004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 2002 2003 2004	2001 2002 2003 2004	2001 2002 2003 2004
1901 1902 1903 1904	1901 1902 1903 1904	1901 1902 1903 1904 1905	1901 1902 1903 1904 1905	1903 1904 1905	1903 1904 1905	1903 1904	1903 1904	1903 1904	1903 1904	1901 1902 1903 1904 1905	1901 1902 1903 1904	1901 1902 1903 1904	1901 1902 1903 1904
1801 1802 1803 1804	1801 1802 1803 1804	1801 1802 1803 1804 1805	1801 1802 1803 1804 1805	1803 1804 1805	1803 1804 1805	1803 1804	1803 1804	1803 1804	1803 1804	1801 1802 1803 1804 1805	1801 1802 1803 1804	1801 1802 1803 1804	1801 1802 1803 1804
1701 1702 1703 1704	1701 1702 1703 1704	1701 1702 1703 1704 1705	1701 1702 1703 1704 1705	1703 1704 1705	1703 1704 1705	1703 1704	1703 1704	1703 1704	1703 1704	1701 1702 1703 1704 1705	1701 1702 1703 1704	1701 1702 1703 1704	1701 1702 1703 1704
1601 1602 1603 1604	1601 1602 1603 1604	1601 1602 1603 1604 1605	1601 1602 1603 1604 1605	1603 1604 1605	1603 1604 1605	1603 1604	1603 1604	1603 1604	1603 1604	1601 1602 1603 1604 1605	1601 1602 1603 1604	1601 1602 1603 1604	1601 1602 1603 1604
1501 1502 1503 1504	1501 1502 1503 1504	1501 1502 1503 1504 1505	1501 1502 1503 1504 1505	1503 1504 1505	1503 1504 1505	1503 1504	1503 1504	1503 1504	1503 1504	1501 1502 1503 1504 1505	1501 1502 1503 1504	1501 1502 1503 1504	1501 1502 1503 1504
1401 1402 1403 1404	1401 1402 1403 1404	1401 1402 1403 1404 1405	1401 1402 1403 1404 1405	1403 1404 1405	1403 1404 1405	1403 1404	1403 1404	1403 1404	1403 1404	1401 1402 1403 1404 1405	1401 1402 1403 1404	1401 1402 1403 1404	1401 1402 1403 1404
1301 1302 1303 1304	1301 1302 1303 1304	1301 1302 1303 1304 1305	1301 1302 1303 1304 1305	1303 1304 1305	1303 1304 1305	1303 1304	1303 1304	1303 1304	1303 1304	1301 1302 1303 1304 1305	1301 1302 1303 1304	1301 1302 1303 1304	1301 1302 1303 1304
1201 1202 1203 1204	1201 1202 1203 1204	1201 1202 1203 1204 1205	1201 1202 1203 1204 1205	1203 1204 1205	1203 1204 1205	1203 1204	1203 1204	1203 1204	1203 1204	1201 1202 1203 1204 1205	1201 1202 1203 1204	1201 1202 1203 1204	1201 1202 1203 1204
1101 1102 1103 1104	1101 1102 1103 1104	1101 1102 1103 1104 1105	1101 1102 1103 1104 1105	1103 1104 1105	1103 1104 1105	1103 1104	1103 1104	1103 1104	1103 1104	1101 1102 1103 1104 1105	1101 1102 1103 1104	1101 1102 1103 1104	1101 1102 1103 1104
1001 1002 1003 1004	1001 1002 1003 1004	1001 1002 1003 1004 1005	1001 1002 1003 1004 1005	1003 1004 1005	1003 1004 1005	1003 1004	1003 1004	1003 1004	1003 1004	1001 1002 1003 1004 1005	1001 1002 1003 1004	1001 1002 1003 1004	1001 1002 1003 1004
901 902 903 904	901 902 903 904	901 902 903 904 905	901 902 903 904 905	903 904 905	903 904 905	903 904	903 904	903 904	903 904	901 902 903 904 905	901 902 903 904	901 902 903 904	901 902 903 904
801 802 803 804	801 802 803 804	801 802 803 804 805	801 802 803 804 805	803 804 805	803 804 805	803 804	803 804	803 804	803 804	801 802 803 804 805	801 802 803 804	801 802 803 804	801 802 803 804
701 702 703 704	701 702 703 704	701 702 703 704 705	701 702 703 704 705	703 704 705	703 704 705	703 704	703 704	703 704	703 704	701 702 703 704 705	701 702 703 704	701 702 703 704	701 702 703 704
601 602 603 604	601 602 603 604	601 602 603 604 605	601 602 603 604 605	603 604 605	603 604 605	603 604	603 604	603 604	603 604	601 602 603 604 605	601 602 603 604	601 602 603 604	601 602 603 604
501 502 503 504	501 502 503 504	501 502 503 504 505	501 502 503 504 505	503 504 505	503 504 505	503 504	503 504	503 504	503 504	501 502 503 504 505	501 502 503 504	501 502 503 504	501 502 503 504
401 402 403 404	401 402 403 404	401 402 403 404 405	401 402 403 404 405	403 404 405	403 404 405	403 404	403 404	403 404	403 404	401 402 403 404 405	401 402 403 404	401 402 403 404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301 302 303 304	301 302 303 304 305	301 302 303 304 305	303 304 305	303 304 305	303 304	303 304	303 304	303 304	301 302 303 304 305	301 302 303 304	301 302 303 3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201 202 203 204	201 202 203 204 205	201 202 203 204 205	203 204 205	203 204 205	203 204	203 204	203 204	203 204	201 202 203 204 205	201 202 203 204	201 202 203 2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101 102 103 104	101 102 103 104 105	101 102 103 104 105	103 104 105	103 104 105	103 104	103 104	103 104	103 104	101 102 103 104 105	101 102 103 104	101 102 103 104	101 102 103 104
84A2 84B 84A2	84A2 84B 84A2	75A 84A2 84C 84A2	75A 84A2 84C 84A2	75A 84A2 84C 84A2	75A 84A2 84C 84A2	84A1 84A2	84A1 84A2	84A1 84A2	84A1 84A2	84A2 84B 84A2	84A2 84B 84A2	84A2 84B 84A2	84A2 84B 84A2
1401동 96호	1402동 98호	1403동 119호	1404동 125호	1405동 119호	1406동 76호	1407동 80호	1408동 80호	1409동 88호	1410동 98호	1411동 96호	1412동 125호	1413동 100호	

주요마감재 시설내역

항 목		75㎡	84㎡	
현관	현관도어록	디지털도어록	디지털도어록	
	세대현관문	분체도장급	분체도장급	
	바닥	폴리싱타일	폴리싱타일	
	마루귀틀	엔지니어스톤급	엔지니어스톤급	
	신발장	설치	설치	
거실/주방	벽지/천장지	실크/실크	실크/실크	
	바닥	룸카펫(6T)	룸카펫(6T)	
	거실아트월	MDF+실크벽지	MDF+실크벽지	
	주방벽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주방가구	문짝	LPM + UV도장	LPM + UV도장
상판		인조대리석(MMA급)	인조대리석(MMA급)	
주침실	바닥	룸카펫(6T)	룸카펫(6T)	
	벽지/천장지	실크/실크	실크/실크	
	드레스룸	문짝	LPM + UV도장	LPM + UV도장
		문짝	LPM + UV도장	LPM + UV도장
	화장대	상판	엔지니어스톤급	엔지니어스톤급
문틀/문선		인테리어시트	인테리어시트	
침실	문짝	인테리어시트	인테리어시트	
	바닥	룸카펫(6T)	룸카펫(6T)	
	벽지/천장지	실크/실크	실크/실크	
욕실	벽	도기질타일	도기질타일	
	바닥	자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천정	PVC판넬	PVC판넬	
주방설비	레인지후드	침니형(BOX TYPE)	침니형(BOX TYPE)	
	가스쿡탑	3구형 가스쿡탑	3구형 가스쿡탑	
	음식물 탈수기	싱크대 배수구설치	싱크대 배수구설치	
	싱크용 절수기	설치	설치	
	주방싱크수전	대불이측변개폐	대불이측변개폐	
욕실설비	욕조(공용욕실)	투명필아크릴	투명필아크릴	
	욕조수전(공용욕실)	안마헤드+온도조절형	안마헤드+온도조절형	
	샤워수전(부부욕실)	안마+레인형헤드	안마+레인형헤드	
	양변기	원피스형(high탱크형)	원피스형(high탱크형)	
	세면기	백색	백색	
	비데	부부욕실	부부욕실	
	기타설비	휴대폰 거치대 겸 휴지걸이	휴대폰 거치대 겸 휴지걸이	
에어컨 냉매 매립 배관		거실, 침실 1	거실, 침실 1	
환기시스템		설치	설치	
조명설비	식탁등	유리글로벌(LED)	유리글로벌(LED)	
	각실 조명기구	아크릴글로벌(FPL)	아크릴글로벌(FPL)	
	거실벽부등	강화유리(EL)	강화유리(EL)	
배선기구	현관일괄소등스위치	설치	설치	
정보통신설비	월패드	설치	설치	

수원호매실 B-3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입주자 모집공고 2015. 09. 24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 일원 수원호매실지구 내 B-3블록
- 공급대상 : 60~85㎡ 10년 공공임대주택 1,300세대
- 시 행 사 : (주)NH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알려드립니다

- 수원호매실 B-3블록은 주택도시금융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주)NH제4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주)NH제4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9.24(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주, 지역우선,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및 수원호매실 공식홈페이지(http://lhms.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원호매실 공식홈페이지(http://lhms.co.kr)는 2015.9.24(목) 10:00시 오픈하며, 동 홈페이지에서 **팸플렛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수원호매실 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렛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주요 변경·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렛은 [LH 수원호매실 주택홍보관]에서 공고일 이후 배포하며, 추석당일(2015.9.27)은 주택홍보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해당주택의 관리번호는 B-3블록 2015001178번입니다.
- 수원호매실지구는「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는「주택법」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외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이 없음**
- 이 공고문에서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하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당첨자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5년)**입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불가)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단,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및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신청자는 현장접수),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신청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함에 유의)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신청이 가능하며(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지자체청거민 및 2순위 일반공급 제외), 인터넷 청약시 청약통장과 관련한 사항(청약순위, 납입인정금액 등)은 **추첨 전** 신청자가 입력(기재)한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통해 검증한 후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첨에서 제외**하오니, **신청시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정확하게 입력(기재)**하시기 바라며, 입력(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익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부적격 당첨)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며,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예비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2015.10.6(화) (10:00~17:00)	2015.10.6(화) (10:00~17:00)	2015.10.7(수) (10:00~17:00)	2015.10.8(목) (10:00~17:00)	2015.10.22(목) (14:00)	2015.10.26(월)~10.28(수) (10:00~17:00)	2015.11.30(월)~12.2(수) (10:00~16:00)
수원호매실 주택홍보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현장접수 불가		수원호매실 주택홍보관		수원호매실 주택홍보관

※ 1순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2순위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6회이상) ※ 지자체철거민, 장애인 불필요	불필요	필요 (6개월·6회이상)	필요 (1순위)	필요 (1순위, 600만원이상)	필요 (1순위)	불필요
자산요건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 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 대 조 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89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가격	두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유 의 사 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공급 규모

- 10년 공공임대주택 18~25층 13개동 전용면적 60~85㎡ 1,300세대(특별공급 910세대 포함)

공급 대상

주 택 유 형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별 주택면적(㎡)						공용대지 면적(㎡)	공급세대수							최고층수	최하층 배정 호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혼 부부	국가 유공자					
10년 공공임대주택	합 계									1,300	130	130	65	260	195	130	390		56	'17.12	
	075,8400A	75A	확장	75.84	23.6732	99.5132	3.1968	27.6320	130.3420	52	194	20	20	10	39	28	20	57	25		8
	084,9400A	84A1	확장	84.94	26.5138	111.4538	3.5803	30.9476	145.9817	58	77	8	8	4	15	12	8	22	21		4
	084,9400D	84A2	확장	84.94	26.5138	111.4538	3.5803	30.9476	145.9817	58	806	80	80	40	161	121	80	244	25		35
	084,8500B	84B	확장	84.85	26.4857	111.3357	3.5766	30.9148	145.8271	58	125	12	12	6	25	19	12	39	25		5
	084,9200C	84C	확장	84.92	26.5075	111.4275	3.5795	30.9403	145.9473	58	98	10	10	5	20	15	10	28	25		4

- ※ 특별공급 미 청약 부문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비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비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계	계약금(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B-3	075,8400A	75A	69,000	13,800	55,200	560
	084,9400A	84A1	82,000	16,400	65,600	620
	084,9400D	84A2	82,000	16,400	65,600	620
	084,8500B	84B	82,000	16,400	65,600	620
	084,9200C	84C	82,000	16,400	65,600	62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항별·축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세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 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한 후에 감액된 임대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증액시(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현행 전환요율 6% 적용시) (단위: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 임대료
B-3	075,8400A	75A	67,000	335	136,000	225
	084,9400A	84A1	74,000	370	156,000	250
	084,9400D	84A2	74,000	370	156,000	250
	084,8500B	84B	74,000	370	156,000	250
	084,9200C	84C	74,000	370	156,000	250

※ 월임대료 증액시(기본 임대보증금→보증금 감액) 예시(현행 전환요율 4% 적용시) (단위: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보증금 환급액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 임대료
B-3	075,8400A	75A	170.00	51,000	18,000	730.00
	084,9400A	84A1	206.66	62,000	20,000	826.66
	084,9400D	84A2	206.66	62,000	20,000	826.66
	084,8500B	84B	206.66	62,000	20,000	826.66
	084,9200C	84C	206.66	62,000	20,000	826.66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합계	택지비	건축비
B-3	075,8400A	75A	213,915	92,288	121,627
	084,9400A	84A1	241,620	103,361	138,259
	084,9400D	84A2	241,092	103,361	137,730
	084,8500B	84B	240,242	103,252	136,990
	084,9200C	84C	239,640	103,337	136,303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75㎡, 84㎡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용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자동차	27,94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ityprice)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자동차 가격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가액 산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격 X {1- (0.1 X 경과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인 불가시 자동차 취득가액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 · 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 :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5년식 자동차를 2014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취득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의 **전년도(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신청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 만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합산 소득이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표3>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4,734,603원	5,224,645원	5,560,026원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 노부모부양 · 다자녀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5,681,524원	6,269,574원	6,672,031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의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12,711원) 추가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조사는 <표4>에 의거 공공임대주택공급 등 복지사업 정보,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여 복지업무처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 당첨자의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 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9.24)에 신청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반드시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불인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표4>의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 → ②국민연금공단 → ③장애인고용공단 → ④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서에 따라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④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를 적용함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표4>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 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수월액 ②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③장애인고용공단 : 사업주의 고용정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근로소득) ④국세청 :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등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 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 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 '일모야' 근로내역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 · 원예업, 양잠업, 증모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원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사업소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 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 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 사학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건처 등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나에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청거민	청약통장 필요 없음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해당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 장애인(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통일부), 한부모가족(수원시), 지자체청거민(수원시),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10년이상 복무군인(국방부),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우수선수(대한체육회), 중소기업근로자(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의사상자(경기도), 납북피해자(통일부), 다문화가족(경기도), 대한민국체육유공자(국민체육진흥공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나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추천기준은 해당 추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5.10.6(화))에 LH 수원호매실 주택홍보관 청약 · 상담창구(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1385번지) 인근)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 층별 · 향별 · 축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 · 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6. 9. 25~ 2015. 9. 24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배정호수

블록	주택형	타입	배정호수		
			계	경기도 거주자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B-3	075.8400A	75A	20	10	10
	084.9400A	84A1	8	4	4
	084.9400D	84A2	80	40	40
	084.8500B	84B	12	6	6
	084.9200C	84C	10	5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 군, 구가 속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배정호수는 주택형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2년 이상 가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정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배정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정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정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 만19세 미만(1996.9.25~2015.9.24 기간 중 출생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2009.9.25~2015.9.24기간 중 출생자)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①또는② 하나만 인정	5	①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②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 (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 (1975. 9. 24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 (1980. 9. 24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시·도·수도권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이상~10년미만	15	
		1년이상~5년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당첨자발표일 이후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가입기간 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고일 이후, 당첨자 발표 전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50.9.24일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만 32세(미혼)이고 세대주 및 노부모 포함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2년

※ 예시 2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만 34세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2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2년

※ 예시 3 : 세대주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4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되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00% 이하인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항별·축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천**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진료(임신)확인서 제출 불가**),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진료(임신)확인서 제출 불가),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임신중인 태어는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 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동일 순위(1, 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1)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많은 분	2)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동일한 경우 추천에 의함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 포함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항별·축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천**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 **II. 신청자격,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분 참조**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항별·축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천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항별·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수원시,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각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 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2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수도권거주, 자산보유기준 충족해야 함]하며,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청약저축 및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기간 기준 :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

III 신청시 확인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p>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2you.com) → 당첨사실조회 → 과거 당첨사실조회</p> <p>→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p>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에 의해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차권 양도·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가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입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노인·장애인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⑥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 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당첨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p>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6세 이상인 분(1950.9.24일 이전 출생자)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p>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LH 수원호매실 주택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 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를 제출해야 함 <p>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p>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중복청약),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청약통장 사용불가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청약통장 사용불가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불가)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세대구성원도 신청불가),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예비당첨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전산관리 지정기관(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예비당첨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동 · 호수를 지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분양임대청약시스템을 통해 예비입주자동호수추첨신청을 한 자 포함)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경기지역 본부 주택판매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031-250-8144~5)를 방문 또는 유선 ·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LH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연행 연7.5%,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인 일반군 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지자체청거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015. 10. 6(화) (10:00~17:00)	방문 신청 (인터넷신청 불가)	청약 · 상담창구 (LH 수원호매실 주택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2015. 10. 6(화) (10:00~17:00)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1순위	2015. 10. 7(수) (10:00~17:00)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2순위	2015. 10. 8(목) (10:00~17:00)		

※ 1순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2순위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팜플렛, 사이버건본주택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및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0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분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이후 발급분이 아니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분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접수당일(2015.10.6(화)) 21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V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p>-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p>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특별순위 신청 선택 → 특별공급 구분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p>- 일반공급</p>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 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p>-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p>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p>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수원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수원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공고일(2015.9.24)기준으로 당해지역(경기도) 과 타지역(서울시 및 인천)으로 구분되므로 주의바라며,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신청이 가능하며(2순위 일반공급 및 일부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인터넷 청약시 청약통장과 관련한 사항(청약순위, 납입인정금액 등)은 추첨 전 신청자가 입력(기재)한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통해 검증한 후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첨에서 제외**하오니, **신청시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정확하게 입력(기재)**하시기 바라며, 입력(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l2you.com)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국민은행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적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국민은행외 가입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l2you.com) → 청약신청하기 APT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방문 신청(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 접수시간 내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 장소(LH 수원호매실 주택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과 마감시간이 동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장소 : LH 수원호매실 주택홍보관 청약 · 상담창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385번지) 인근]
- 방문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에게 당첨자에 한해 LH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명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급유형별 필수 구비서류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① 공급유형별 공급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 시) ⑥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초본(2015.9.24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장소에 비치 신청장소에 비치 신청자 구비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 사항, 전입일/변동일/변동 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① 공급유형별 공급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 용도 : 특별공급(특별공급 유형별로 발급), 일반공급(1~2순위 신청용)	신청장소에 비치 신청장소에 비치 신청자 구비 (청약통장 가입 은행, www.apl2you.com)
신청주체별 추가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도장(서명가능)	신청자 구비
	배우자 신청 시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구비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 자로 간주)	공통 ①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위임장 ③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④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인감증명 방식 ⑤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서명확인 방식 ⑥ 본인(신청자) 서명사실 확인서	신청자 구비 신청장소에 비치 신청자 구비
	기타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추가제출) ①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 ②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③ 주민등록등본	신청장소에 비치 신청자 구비

VI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계약체결(당첨자)
2015.10.22(목) 14:00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myhome.lh.or.kr)	2015.10.26(월) ~ 10.28(수) 10:00~17:00	2015.11.30(월) ~ 12.2(수) 10:00~16:00
장소 : LH 수원호매실 주택홍보관 청약 · 상담창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385번지) 인근]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당첨자 명단조회 또는 당첨자개별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안내	

- ※ 특별공급(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당첨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 ※ **부적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당첨자 서류접수일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되어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당첨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031-250-8144~5)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공동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2015.10.26(월) ~ 10.28(수), 10:00~17:00)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으며,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서류제출 시 신분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 · 비속 포함), 대리인은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배우자 신청시도 포함)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산 · 소득조회용)"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불가합니다.(동의서 양식은 입주자모집공고시 별도 첨부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람)
- ※ 국가유공자 ·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당첨자는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 유형		구 비 서 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세대주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⑤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 만33세 미만자(1982.9.25일 이후 출생자)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에 표시한 자
		○	⑥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산 · 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원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⑦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⑧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세대원	•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중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	⑨ 재직증명서	본인	
		○	⑩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특별공급(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 유형		구 비 서 류	발 급 기 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및 세대주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원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⑥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⑦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세대원	•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중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	⑧ 재직증명서	본인	
		○	⑨ 청약통장소위 (가입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다자녀 특별 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정(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 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	본인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0년이상)으로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 부부 특별 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②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③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④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생애 최초 특별 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인 이상인 세대로 신청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자녀	• 자녀가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미혼자녀 확인 필요시(만 18세 이상(1997.9.24 이전 출생자) 자녀 해당)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6) 참조)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이전의 5개년도 서류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현재 만33세 미만자(1982.9.25일 이후 출생자) 중 주주택기간 3년 이상에 표시한 자
	○		③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④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피부양 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수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자

<표6> 소득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해당)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인정서류	공통서류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2014.9.25~2015.9.24) 소득세 납부여부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해당직장/세무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①세무서 ②해당직장 ③해당직장 /세무서 ④ 세무서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9.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① 계약금(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③ 당첨자의 도장 또는 서명(서명의 경우 배우자인 경우라도 서명확인 방식의 제3자 대리계약서류 구비)
제3자 대리계약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⑥ 서류 제출) ④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⑤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⑥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② 및 ⑦~⑨ 서류 제출) ⑦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⑧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⑨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Ⅶ 유의사항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수원호매실 B-3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주)NHF제4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주)NHF제4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 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사이버건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청약·상담창구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점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별(1·2순위)로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엔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LH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고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 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분양임대청약시스템을 통해 예비입주자동호수추첨신청을 한 자 포함)하고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자산기준 초과, 부적격소명자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이의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청약통장 사용불가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불가)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전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가입주자의 계약으로 인한 공개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⑥항 14의2호에 따라 입주전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주)NHF제4호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임대주택고객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031-250-8144~5)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 변경]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div><div></div>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div>					
 <p>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p>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지체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공 용 욕 실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절 세면기	지체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거 실	월패드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지체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주 방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싱크대(물버림대)	지체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주동·통로 유도시설	음성유도신호기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 신청시기** : 2015.11.30(월)~12.2(수)최초 계약체결기내 내, 계약이후 신청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 취소가 불가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 수첩사본,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포함

구분	적용 여부
고효율기자재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일괄스등스위치	적 용
고효율조명기구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지구및 단지 여건

■ 지구 여건

- 본 지구 외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해당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구 인근에 수원비행장이 위치하여 항공기의 비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파장애가 있을 수 있음**
- 지구 중심을 관통하는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및 동 도로 확장공사(예정)의 영향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가 공사중(지구내 구간 지하화)이며, 해당 도로 공사에 따른 영향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서측 의료시설부지내에 종합병원 유치시 병원부속 장례식장이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내에 위치한 저류시설은 홍수 등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수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 화성시가 칠보산 인근 화성시 매송면에 '화성시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인근에 시립어린이집이 위치함
- 단지 북측, 남측으로 공동주택이 위치함
- 단지 남서측에 초등학교·중학교 각 1개교가 위치함
- 단지 서측과 연결한 의료시설 일부 부지를 토사 가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입주 및 입주 이후에도 다소의 기간동안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 33m 도로가 위치, 동측 35m 도로가 위치함
- 단지 남측으로 35m 도로 및 지하차도가 위치함
- 단지 인근에 열공급설비(열) 및 변전소(변)가 설치되어 있음
- 단지 북측에 수변공원이 위치함
- 단지 남서측 및 북동측에 저류시설이 위치함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등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전기실 및 발전기실 위치 : 1410동과 1412동 사이 지하]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 · 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점검구로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 2층과 최상층 세대의경우 발코니 또는 침실에 동작감지기가 설치되며, 기타층 세대의 경우 거실에 동작감지기가 설치됨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경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에 환풍이 설치되며, 환풍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으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며, 각종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인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시니어센터 및 키즈센터 등에 주방기구와 신발장을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등)내 내부시설물(운동기구, 컴퓨터, 책상, 도서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경비실의 주방가구를 제외한 기타 내부 시설물(컴퓨터, 책상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은 분할되지 않는 토지로서 단지 내 아파트 대지면적과 일정 면적을 지분으로 시공할 예정임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 계약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바람
- 단지내 각종 표장부위의 패턴 및 색상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는 고저차 및 단지역간상 도로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경사도가 급할 수 있음
- 항공기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입주 후 항공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접수하시기 바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을 출입할 수 없음
- 단지 내 쓰레기수거함,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자전거 보관소,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옥외운동시설 등의 시설물과 경비실,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을 따라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으로 인해 소음 발생에 따라 인접세대에 생활권 침해를 줄 수 있음
-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1~3층)는 주로 석재뿔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며, 층벽 일부분에 한하여 화강석 돌붙임으로 마감됨
-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및 이미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체의 품질, 품귀 및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사위, 빨래건조 및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본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므로,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단열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본 주택은 세대별로 별도의 대피공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를 통해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임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우수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및 침실 1에만 설치됨
- 최상층세대 발코니의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됨
- 발코니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음
- 주방기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주방기구 뒤선반은 일부분에만 시공되며, 타입별 시공부위는 사이버 견본주택을 확인 바람
 - 급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팜플릿등 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분양시 마감재수준을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람
 - 사이버모델하우스 내 가구소품, 디스플레이, 전사용품등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감도 상 조정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B-3블록은 수원금호초등학교로 통학구역이 계획되어 있음
 - 동 블록은 호매실중학군(상촌중,칠보중,호매실중,능실중)에 속함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는 수원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교내 지방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고등학교의 경우 수원지역이 평준화지역으로 학생배정은 지방에 따라 수원시 관내 고등학교로 배정되며, 상기 지구내 고등학교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철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배치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주)NH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76-81-00036)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농협은행주식회사 (104-86-39742)	요진건설산업(주) 224-81-11397 티이씨건설(주) 110-81-07293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시 행 사 : (주)NH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NH)